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가. 금융투자업규정 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등)
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(매출신고서 면제요건 및 합병 법인가치 산정기준 개정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5/6/2 개정 · 시행) 2)

1) 개정 이유

□ 대체거래소(ATS) 운영방안,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NCR 적용 면제(제3-6조, 제3-24조, 제3-26조, 제3-27조, 제3-28조, 제3-36조, 별표 10의5)

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NCR이 적용되는 1종 금융투자업에서 제외하고 4종 금융투자업자로 분류

- NCR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100%, 85%, 70%(미달시 인가 취소 사유) 기준으로 적기 시정조치 및 경영개선 협약 적용

□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보고서, 결산서류 정비(제3-66조, 제3-67조)

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NCR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보고서 및 결산서류 기재사항을 정비

□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(제4-19조)

— IPO 주관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를 금지해,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

□ ETF · ETN 관련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 등 정비(제4-48조의2, 제7-28조)

— ETF 및 ETN은 상품 특성상 유동성공급을 수반하므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ETF 및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,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유동성공급업무를 ETF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에 포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제4-19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□ ATS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겸직 허용(제4-55조)

—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프로그램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시장만 달라질 뿐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것은 동일하므로, 신탁 운용담당자의 겸직 허용

□ 소매채권매매 한도 확대(제5-1조)

— 예외적으로 당일 결제가 허용되는 소매채권매매의 한도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

□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허용(제5-18조)

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(국제신용등급 A이상, 관련 정보 증권사 · 금투협 제공)을 충족하는 국제기구 채권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각 호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2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(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발행, 해외에서 공모)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KP물의 대고객 RP 허용

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(2025/6/2 개정 · 시행, 2025/6/25 개정 · 2025/7/22 시행)

1) 2025/6/2 개정 · 시행

가) 개정 이유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시행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□ 매출신고서 면제요건(제2-4조의2)

—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

□ 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(제5-13조의2)

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함

2) 2025/6/25 개정 · 2025/7/22 시행

가) 개정 이유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0718호, 7.22일 시행) 시행 등에 따른 하위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— 자본시장법 제160조, 제161조 개정 등 따른 하위 규정 인용조문 정비

나) 주요 내용

□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(제2-3조 제1항 제2호, 제2-4조)

—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이 기존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

□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(제4-3조 제1항 제3호, 제4-5조 제2항 제5호)

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·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는 공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